



농림축산식품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경기 화성 가금농가(산란계)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

1. 관련: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-2608('22.1.22.)호,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-668('22.1.21.)호
2. **경기도 화성시 소재 가금(산란계) 사육 농가(2호)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(H5형 확인)이 발생함에 따른 차단방역 강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- 아 래 -

가.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(AI SOP)에 따른 방역조치

□ AI 방역대책상황실 운영(공통)

- 고병원성 AI 확진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, 협회 및 전국 지자체는 AI 방역상황실 24시간 운영 및 보고체계 구축

□ 의사환축 발생 농장 소재 시·도 및 시·군·구(경기도)

- 검출 농장에 대한 조치
 - 해당 농장의 사육가금 등 고병원성 AI 감수성동물은 즉시 살처분 명령 조치
 - 농장주(가족 및 직원 포함), 차량, 가금 및 물품에 대한 이동제한 실시
- 의사환축 발생 농장 및 역학농장의 가축 이동사항 및 출입자·출입차량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 후 방역조치 대상을 선정하여 농식품부·검역본부 및 관련 시·도, 시·군·구에 보고(통보)
- 차단방역 강화조치
 - 의사환축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 설정
 - * 해당농장 중심 반경 10km 이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신속한 예찰
 -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장(닭·오리·거위·기러기 등 가금 사육 전업농)에 대해 '22.1.27일까지 정밀검사(PCR) 완료(관리·보호지역은 '22.1.25일까지 완료)
 - * 방역대 내 감수성 가축 사육농가 현황 파악 후 우리 부 제출 및 임상예찰 실시
- 살처분 범위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-668('22.1.21.)호에 의거하여 설정*하고, 해당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명령서[붙임 2]를 즉시 사전발부

- * 대상: 500m 방역대 이내 전체 가금 축종(오리 사육농장에서 발생 시 발생 농장 500m~1km 내 오리 사육농장 추가 예방적 살처분)
- 방역대가 타 지자체와 겹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 실시
-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
 - * 시·군, 계열화사업자 등을 통해 계열농가 및 개인농가에 대해 일일 소독 후 보고
- 살처분·매몰 등 현장방역조치 대비 인력 및 장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, 보건소와 사전 협의하여 항바이러스제 확보
- 방역지역 설정에 따른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장소 설치 등 고병원성 AI 발생에 준하는 방역조치 즉시 시행
-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·정밀 검사(PCR)*를 실시하고,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
 - *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·차량이 출입한 농장의 가금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
-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축산관련시설*은 즉시 세척·소독 및 건조 후 환경검사**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운영 재개
 - * 사료공장, 사료하치장, 왕겨업체, 식용란선별포장업(GP), 부화장, 분뇨·비료업체 등
 - **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·차량이 출입한 축산시설의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 실시
 - 역학 관련 방역조치 대상(14일 이내) 우선 시료채취·검사 실시
-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 운영 및 방역관련자 비상대기 조치
-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에 대비하여 발령체계 점검
- 방역대 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는 수매·도태 추진
-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 지도·홍보 철저

□ 경기도 이외 지자체

- 의사환축 발생 지역 접경 지대는 이동통제 초소 설치
- 의사환축 발생 방역대가 관내 설정된 지자체는 해당 지역 내 소재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신속한 예찰 추진
 - 방역대 내 가금사육농장(닭·오리·거위·기러기 등 가금 사육 전업농)에 대해 '22.1.27일까지 정밀검사(PCR) 완료(관리·보호지역은 '22.1.25일까지 완료)
- 방역대 내 감수성 가축 사육농가 현황 파악 후 우리 부 제출 및 임상예찰 실시
 - 살처분 범위는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-668('22.1.21.)호에 의거하여 설정하고, 해당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명령서[붙임 2]를 즉시 사전발부

-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은 즉시 이동제한 및 예찰·정밀검사(PCR)*를 실시하고,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일일 소독 실시 및 관리 강화
 - *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·차량이 출입한 농장의 가금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
- 의사환축 발생 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축산관련시설*은 즉시 세척·소독 및 건조 후 환경검사**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운영 재개
 - * 사료공장, 사료하치장, 왕겨업체, 식용란선별포장업(GP), 부화장, 분뇨·비료업체 등
 - ** 발생일 기준 과거 21일 이내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·차량이 출입한 축산시설의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정밀검사 실시
 - 역학 관련 방역조치 대상(14일 이내) 우선 시료채취·검사 실시
- 관할지역 내 모든 가금농가에 대해 신속하게 예찰 및 임상검사 실시
- 관할 소규모 농가 및 방역취약농가에 대해 전화,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방역실태 지도·홍보·점검
 - 방역대 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는 수매·도태 추진
 - 가금 사육농가 방사 사육 금지 지도·홍보 철저
-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에 대비하여 발령체계 점검

□ 농림축산검역본부

- 중앙역학조사반을 급파,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의무 위반사항 정밀 조사
 - 역학조사 시 농장 사육환경·방역실태를 파악하여 우리 부 및 해당 지자체에 공유하고,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지자체에 이첩
 - KAHIS 축산차량 출입정보 등을 활용해 '빅데이터 기반 AI 확산위험도 분석' 결과를 우리 부 및 지자체에 신속히 제공하여 사전방역 조치에 활용토록 조치
- 중앙기동점검반 점검 실시
 - 의사환축 발생 지역 가금농가의 야생조류 차단, 구서, 살처분 사후 관리, 이동통제초소·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가금농가 소독실태(공동방제단 및 지자체 소독실태 포함) 점검
- 기동방역기구 파견
 - 대상 지역: **경기도 화성시**
 - 주요 임무: 방역기술 지원, 살처분 인력 AI 방역 교육, 소독장비 운영, 이동통제초소 설치·운영 및 사체처리 작업 등 기술자문, 현장 소독 및 통제초소 운영실태 등 점검 및 방역조치 등
- 축산차량 이동현황 및 방역지역 현황 등 보고
-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실 운영 철저(비상연락망 구축 등)

□ 보건복지부(질병관리청)

- 「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」에 따라 방역 인력 및 물자(항바이러스제 공급 등)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

□ 국방부·경찰청

- 시·군·구에서 현장 방역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

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
-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감독 하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의사환축 발생 농장의 가축 및 생산물의 농장 밖 이동을 금지하고 외부인 및 차량 등의 진입 제한
 -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·차량의 출입을 제한하고, 부득이 허용하는 경우 소독·기록 관리 철저
- 의사환축 발생 농장의 진입로 소독(생석회 살포 등)
- 의사환축 발생 지자체 및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강화
 - * 검출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농가는 '22.1.22.(토)까지 전화예찰을 완료하고, 방역대 해제 시까지 매일 실시

□ 농협경제지주

- 의사환축 발생지역 내 가금농가 소독 실시(공동방제단)
 - 방역대 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, 의사환축 발생 시군 내 모든 가금농가로 확대하여 실시
- 가금류 검사관련 지자체에서 시료채취 인력 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

□ 관련 협회(단체 포함) 및 소속 농가

- 중앙 및 지방정부, 관련 단체의 긴급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
 -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에 대비하여 가금 사료 확보 등 대비 철저 홍보
- 전국적인 축산농가 모임, 행사 등 금지
- 관련 협회에서는 회원 등을 대상으로 및 매일 임상검사 실시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(1588-4060, 9060)토록 전파
-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 강화 및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이동통제 적극 협조 홍보
- 금번 의사환축 발생지역을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가금 농가 방문 자제 및 방문이 불가피할 경우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

나. 방역지역 내 특별 방역강화 조치(방역대 해제 시까지)

□ 보호지역 내 방역 강화 조치

- *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-10589('21.11.23.)호, -10546('21.11.16.)호 및 -10472('21.11.13.)호 관련
- 해당 지역 내 가금 사육농가는 5일 간격 정밀검사 실시
- 가금 사육농가 진출입로 및 인근 소하천·저수지 주변도로 등 취약지역 매일

